

의안번호	제 67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
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1년 4월 13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67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4월 1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연금 등의 지원 (안 제3조)
 - 유치위원회의 설립·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 가능
-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(안 제6조)
 -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 및 겸임근무하게 가능

3. 의안 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등)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(이하 “유치위원회”라 한다)는 「민법 제32조」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.

② 유치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유치위원회의 설립·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) ① 출연금과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1. 유치위원회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
2.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, 연구 활동
3.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유치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집행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사용) 도지사는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도지사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행정지원 등)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·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잔여재산의 귀속)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·세종특별자치시·충청북도·충청남도) 공동유치위원회로 분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3. 11.>

1. “국제경기대회”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.

다.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 7. 16.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34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35조(대부료의 감면)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6. 7. 12., 2018. 12. 4., 2020. 12. 22.>

3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

□ 지방공무원법

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

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27조의2(파견근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13조(잔여재산의 귀속)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
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(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충청남도)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추진에 따른 유치추진 사업비 및 운영비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유치활동추진에 따른 국외유치 활동비, 전문인력확보, 실사진행 및 FISU 대응비 등 필요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 : 안 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4개 시·도 공동유치추진 소요경비 / 80억원
- 유치위원회 운영(출연금 지원) : 70억원
(전문인력확보 10억원, FISU 국내 현지실사 대응 24.4억원, 대내외 홍보체계 구축 1.6억원, 국제행사 프로모션 및 해외 홍보영상제작 34억원)
 - U대회추진과 운영 : 10억원
(실사진행 및 유치활동 8.65억원, 사무실운영 0.85억원, 타당성조사용역 0.5억원)
- ⇒ 시·도별 20억원씩 부담
- 나. 추계결과 : '21년 80억원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- ※ 공동유치 분담금 80억원 세입 편성(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 각 20억원씩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계
	기편성	추가편성					
세 입	2,000	8,000					10,000
충청권 공동유치 분담금	1,500	6,000					7,500
지방세 등 자체수입	500	2,000					2,500
세 출	2,000	8,000					10,000
유치신청서 작성 컨설팅	1,000						1,000
언론홍보 등	300						300
실사진행 등 유치활동	538	865					1,403
사무실 운영(U대회추진과)	162	85					247
타당성조사용역		50					50
유치위원회 운영		7,000					7,000

* (기 편성 예산) 공동유치 4개 지자체에서 5억원씩 공동부담, 충북에서 세입세출 일괄편성
 (추가편성예산) 공동유치 4개 지자체에서 20억원씩 공동부담, 충북에서 세입세출 일괄편성
 - 유치위원회(법인)에 70억원 출연, U대회추진과에 10억원 편성

6. 작성자 :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